

수출용 물품 매매 및 용역 계약서

계약번호 : DW-FDH-ZOR-170331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원테코(이하 “을”이라 한다)는 쿠웨이트 KNPC Al-Zour New Refinery Project 내 FDH JV(이하 “발주처”라 한다)가 발주한 Field Erected Tanks 프로젝트(이하 “Project”라 한다, Contact No.: L9ZR-HI-40-K401, L9ZR-HO-40-K508)와 관련하여 설계, 기자재 공급, 설비설치, 토목공사 및 시운전 감리 등을 포함한 “갑”的 “Project”에 대한 제반 의무와 관련하여, “을”이 제3조에서 정한 “용역”的 제공 및 기자재 및 부품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공급 및 관련 현지업무를 수행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05
05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갑”이 “Project” 내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이 “갑”에게 제공해야 하는 “용역”的 범위 및 “물품” 공급의 범위, 협력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Project” 수행을 원활히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양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Project”的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2조 (“갑”的 업무범위)

- ① “본 계약서”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은 “을”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을”이 제3조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 ② “갑”은 자신의 지식, 경험 및 의견을 가지고 대금지급에 있어 “갑”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의 업무범위)

① “용역”의 업무 범위

가. “을”은 “본 계약서”상의 본 “Project”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설비구매와 관련된 기술지원, 설비검수, 토목공사 및 설비설치 관련 인원파견, 시운전 감리 등 엔지니어링 및 기술 지원업무에 대한 모든 의무 (이하 “용역”이라 한다)를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전술한 역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의 “프로젝트” 내 “일반약정” 및 “특별약정”的 규정에 의한다.

나. “을”은 “Project” 상 “용역”을 첨부된 “Project”의 진행일정에 따라 수행하고 각각의 “용역” 수행 후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 “을”이 수행한 “용역”에 대해 “갑”的 서면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을”은 전 ‘가’항의 업무의 수행에 있어 “갑”的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갑”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을”은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지식, 경험 및 의견을 가지고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업무 범위

가. “을”은 “Project”상 “물품”의 제조, 인도 및 인도 후 관리에 대한 모든 의무 (예를 들어, “물품”的 제조, 선적전 제3자 검사, 선적, 인도, 현지 면세절차 획득, 하자보증, 설치 및 감리 책임, 제조물 제조사 책임, 손해배상금 지불의무 등)를 “을”的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전 ‘가’항의 업무의 수행에 있어 “갑”的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갑”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을”은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지식, 경험 및 의견을 가지고 “원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갑”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품”등)

“물품”의 명세 및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품명 및 수량 : Storage Tank 설비 관련 기자재 및 부품 류.
세부 항목은 유첨 1을 따른다.
2. 납기 : 2017년 09월 30일
3. 상세한 내역, 사양, 포장 및 Marking 등은 “Project” 기준인 유첨 2를 따른다.

제5조 (“물품”의 인도 등)

① “을”은 제 4조 2호 에서 명시한 납기일에 ~~발주~~ ^{발송} CIF Kuwait Port, Kuwait(Incoterms 2010)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한다.

② “을”이 전 ①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갑”에게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갑”이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비용 및 “Project” 내 관련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 전부를 “갑”에게 美달러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금액)

본 계약에 정한 “을”的 의무이행에 대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대가로 “갑”은 총 미화 일천삼백육십칠만구천사백불 (US\$ 13,679,400.-) (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을”에게 본 계약서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불하기로 하며 그 구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용역”의 계약금액 : 미화 칠백만불(US\$ 7,000,000.-)

가. “용역”의 계약금액은 월별 기성고로 결정하며 세부사항은 제 7조의 대금 지급 일정에 따른다.

② “물품”의 계약금액 : 미화 육백육십칠만구천사백불(US\$ 6,679,400.-)

가. 1차 대금 : 미화 사백만불(US\$ 4,000,000)

나. 2차 대금 : 미화 일백사십삼만육천사백불 (US\$ 1,436,400)

다. 잔 금 : 미화 일백이십사만삼천불(US\$ 1,243,000)

제7조 (대금 지불 등)

① “용역”의 대금지불



가. “갑”은 “본 계약서” 제6조에 명시된 금액을 월별 기성고 기준 분할하여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며, 아래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비율 ("계약금액" 기준)	지급 조건
10%	“을”의 General Assembly drawings (기본설계) 및 Calculations 제출 완료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15%	“을”이 제출한 General Assembly drawings 에 대한 “갑”的 1 차 검수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15%	“을”이 제출한 General Assembly drawings 에 대한 “갑”的 최종 승인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15%	“을”이 제출한 Calculations 에 대한 “갑”的 최종 승인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15%	“을”的 최종 공급 물량 산정에 대한 “갑”的 최종 승인 및 관련 물량 선적 완료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12%	“을”的 건설 설계도면에 대한 “갑”的 최종 승인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18%	“을”的 현지 시운전 감리 완료 후 Data book 제출 및 “갑”的 최종 승인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나. “을”은 상기 (1)항 상 각 Invoice 산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역무 관련 공정표, 산출물 및 인력 투입 내역 등을 포함한 월별 기성 보고서(Monthly Progress report)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금 지급은 상기 보고서의 “갑”的 승인 후 30일 내에 지급토록 한다.

다. “을”이 “Project”에 명시된 “을”的 역무를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함으로써 “갑”이 “Project”수행함으로써 수령한 “계약금액”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을”이 상기 가. 항에 명기된 각 차수에 따라 수행해야 할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갑”的 결정에 따라 “Project” 진행일정이 연기된 경우 또는/및 “용역”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해 “갑”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을”的 실질적인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차수의 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마. “을”은 “용역”과 관련하여 “갑”的 결정에 따른 “용역” 내용의 변경 및 기타 사유들로 인해 제 3조에 명시된 “계약금액” 이외에 별도의 추가정산이

필요한 경우, “갑”에게 해당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갑”은 “Project” 수행 간 관련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을”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① “물품”의 대금지불

- 가. “갑”은 본 계약서 제 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발효 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을”을 수혜자로 하는 상기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외화 표시 구매승인서를 발급한다.
- 나. “갑”은 아래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계약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 1) “1차 대금” : “갑”이 본 계약서 제13조 ①항에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를 수령 후 5 영업일 이내 “을”에게 “1차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지정한 美달러화 계좌로 송금.
 - 2) “2차 대금”: “물품”的 쿠웨이트 도착 후 “인수증” 발급 후 10 영업일 이내 “을”에게 “2차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지정한 美달러화 계좌로 송금.
 - 3) “잔금” : “갑”이 본 계약서 제13조 ②항에서 정한 “을”的 “하자(계약)보증보험증권”를 수령 및 “을”이 “물품”에 대한 쿠웨이트 내 Income Tax Control Office로부터 Tax Liability 종결 및 Custom Duty Exemption 승인관련 공문 제출 후 60 영업일 이내, “을”에게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지정한 美달러화 계좌로 송금.

제8조 (면책)

- ①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을” 자신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지적재산권 침해 기타 불법행위 또는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제3자가 “갑”에게 클레임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대금지불거절, 소송제기 등(이하 “클레임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을”은 이러한 클레임 등으로부터 “갑”을 면책 시켜야 하며 이러한

클레임 등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을”의 전술한 클레임 등의 미해결 또는 해결지연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예를 들어, 제3자에게 “갑”이 지불한 금액, 새로운 파트너사를 물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파트너사를 변경하여 “Project”를 이행하는데 따른 추가비용, 변호사비용, 검사비, 조사비, Consultant Fee, 소송비용, “갑”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연리 12%에 해당하는 이자 등)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갑”은 그 손해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를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 ② “갑”은 제3자로부터 수령한 “물품”的 하자 및 “클레임 등” 관련 통지서를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하자 및 “클레임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위 손해배상 청구 및 “을”的 클레임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에 정한 “을”的 의무는 이 계약의 종료, 해지 또는 해제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하도급금지)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된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0조 (하자보증)

“을”은 “본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 동안 “물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한다. 보증 기간 중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자체 없이 “을”的 비용과 책임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없는 “물품”으로 교체하는 등 하자보증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을”은 본 계약서 체결 일로부터 10년 동안 “물품”的 Spare Parts 또는 그에 동등

한 물건의 Availability를 보증한다.

제11조 (양도금지 등)

본 계약상의 일방은 본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 및 권리를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12조 (통보의무)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반 진행사항을 “갑”에게 수시로 또는 “갑”이 요청할 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담보)



① (계약이행보증 담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을”의 모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보험금액 미화 오백 삼십만불(US\$ 5,300,000)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본 계약서” 체결 후 10일 내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금액은 분담해서 제공할 수 있다. 보증보험기간은 “본 계약서”의 체결일로부터 “Project”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8년 9월 30일로까지 한다.

② (하자보증 담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을”의 하자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보험금액 미화 일백 육십만불(US\$ 1,600,000)에 상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이하 “하자(계약)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상기 ①항의 계약이행보증 담보 종결 5일 전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간의 연장) “을”이 “갑”에게 제공한 상기 ①항, ②항 담보의 담보기간 내에 “본 계약서”에 따른 “Project”와 관련한 “갑” 또는 “을”의 보증의무가 종료하지 않을 경우에 “을”은 “갑”에게 제공한 담보의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여야 하며, 동 만기일은 전술한 보증의무의 완료시점까지 연장된다. 또한, “갑”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roject”的 일정이 지연되어 “갑”이 상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的 기한을 연장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을”은 해당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14조 (발효 및 해제 등)

① “본 계약서”는 본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②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본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갑”에게 손해 (예를 들어,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새로운 파트너사를 물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파트너사를 변경하여 원 계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추가비용, 변호사 선임비, Consultant Fee, 검사비, 조사비, 소송비용 등)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서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나. “을”的 귀책사유로 “Project”가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다.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거나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퇴출기업으로의 지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로부터 소집통보, 구조조정협약 적용 신청이 있는 경우

라. 발행, 배서 또는 지급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마. 전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본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의사
가 없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제15조 (수정)

본 계약서의 각 조항(본 조항 포함)은 반드시 양당사자의 서면합의로써만 수정, 변경, 삭제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로써 수정, 변경, 삭제되지 않는다.

제16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원 계약 준용)

“을”은 본 계약의 체결로써 “Project”의 계약조건과 제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함을 확인한다. “본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Project” 관련 문서인 유첨2의 “일반약정” 및 “특별약정”的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만일 준용할 규정이 없거나 준용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해당사항에 필요한 규정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만일 합리적인 기한 내(단, 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법원(法源)을 결정하기로 한다.

<첨부>

- 유첨 1 : 공급 물품 리스트

- 유첨 2 : Project Document

“일반약정” : PART I – SCOPE OF WORK

PART II – COMMERCIAL TERM

PART III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특별약정” : PART IV – SPECIAL TERM

체결일 : 2017년 3월 31일



갑 :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을 : 주식회사 원테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7

대표이사 오 창 재



합 의 서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이하 “대우”)과 주식회사 원테코(이하 “원테코”)는 FDH JV(Fluor Ltd.,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간 Joint Venture)(이하 “발주처”)에서 진행한 쿠웨이트의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KNPC)의 Al Zour Refinery Project(ZOR)의 내 Field Erected Tanks 공급 및 공사 프로젝트(이하 “Project”)의 향후 수행 및 역무 분할을 위해 2016년 8월 5일 Consortium Agreement(이하 “원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17년 1월 18일 Project 관련 “발주처”로부터 Letter of Award 와 Notice to Proceed 를 입수했으며, 2017년 1월 18일 “발주처”와 체결한 Offshore 계약 (계약 번호: L9ZR-HO-40-K508 (Off-shore) 및 Onshore 계약 (계약번호: L9ZR-HI-40-K401(Onshore)) (이하 통칭하여 “본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전 문

“대우”와 “원테코”는 “발주처”와 2017년 1월 18일 체결한 “본 계약”과 더불어 주계약자 간 연대책임을 규정한 Coordination Agreement (이하 “Coordin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에 양사는 “본 계약” 및 “Coordination Agreement”에 따라 Project 수행 관련 “원 합의서”를 보완 및 수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 적)

이 합의서는 기 체결된 Project 관련 “본 계약” 및 “Coordination Agreement”를 바탕으로 “대우”와 “원테코”的 공동 협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기 체결된 “원 합의서” 내 “대우”와 “원테코”的 권리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증 및 “원테코” 역무 수정)

- 가. “대우”는 “원 합의서” 내 Article 2 와 “Coordination Agreement” 내 Article 3 조에 따라 “본 계약”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Performance Guarantee Letter 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나. “원테코”는 Onshore 계약 및 “대우”와의 하도급계약 상 자신이 수행하는 역무의 이행률 보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 금액(Off-shore USD25,133,485 / On-shore KD11,890,840.06)의 10%에서 “대우”의 이익금(USD1,256,000)을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이행보증금 미화 오백삼십만 달러(USD 5,300,000)의 보증보험을 “대우”에게 제공한다.

나. “원테코”는 Offshore 계약 상 “대우”의 역무 중 “대우”가 제 3 자로 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는 모든 설비 및 자재와 기본설계역무(General Assembly Drawings)를 “대우”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납품 및 이행하여야 하며, Offshore 계약 상 규정된 상세설계역무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처”에게 제공한다.

제 3 조 (대금지급)

가. “발주처”가 지급하는 Offshore 계약 금액은 “대우”가 전체 수취한다.
나. Offshore 계약 상 “원테코”의 역무가 종결되고, 이와 관련한 “발주처”의 대금이 모두 입금된 후 5 일 내에 “대우”는 “원테코”에 지급하도록 한다. “대우”가 “원테코”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 금액 및 지급조건은 수출용물품매매 및 용역계약서 내 제 7 조를 따른다.

제 4 조 (유효 기간)

가. 이 합의서는 이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 이 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해지에 합의하거나, 이를 대체함을 명시한 새로운 합의서의 체결 전까지 유효하다.
다.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최대 주주 변경, 상호 변경에 관계 없이 이 합의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 일방 당사자에게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퇴출기업으로의 지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소집통보, 구조조정 협약적용 신청이 있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Project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동 일방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며 타방 당사자는 최고 등의 사전 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즉시 이 합의서를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기타)

이 합의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원 합의서”의 제반 사항은 “원 합의서”的 체결일로부터 그대로 유효하다.

체결일 : 2017년 3월 31일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대표이사 사장 김영상



주식회사 원테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7
대표이사 오창재

